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7
----------	-------

발의연월일 : 2022. 1. 13 .

발 의 자 : 김기현 · 권명호 · 권은희
김석기 · 김예지 · 박수영
배진교 · 백종현 · 서정숙
용혜인 · 윤주경 · 윤창현
이양수 · 이채익 · 조태용
허은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다만,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가사·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

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제18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u>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u>할 수 있다.</u>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 ----- ---- <u>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u>